

광주지방법원 2021. 9. 17 선고 2021가단375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8. 20.

판 결 선 고 2021. 9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
나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2㎡를 인도하며,
다. 2016. 11. 28.부터 위 나.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김용태

별지